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3. 29 선고 2021가단863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정문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 18.
판 결 선 고 2023. 3. 2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3,436,73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3,436,731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8. 4. 1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여수시 G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8. 4.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444,636,060원, 보험기간 2018. 4. 16.부터 2021. 4. 25.까지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5.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59,450,000원, 보험기간 2018. 12. 5.부터 2021. 4. 25.까지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2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E 대표이사인 H와 H의 아들인 C은 E이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2021. 4. 22. 원고에게 E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후 E과 F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가합10970(본소), 2021가합11218(반소) 사건에서 2022. 9. 6. E이 F에게 지체상금, 대위지급 노무비, 대위지급 공사비, 하자보수비, 미시공공사비 합계 999,507,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22. 10. 19. 확정되자 원고는 2022. 11. 2. F에게 498,681,514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21. 3. 12.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1. 3. 16. 접수 제72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시가 222,000,000원 상당1)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출금 채무 68,191,922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455,830원,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200,000,000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 498,681,514원 등 총 767,329,26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원고는 2021.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카단10794호로 피보전채권을 C에 대한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권으로, 청구금액을 504,086,06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1. 5. 7. 접수 제12318호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I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21. 11.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175,000,100원에 매각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경매법원은 2022. 10. 2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103,436,731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2. 10. 25.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2021. 4. 22.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21. 3. 12.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과 보험사고 발생일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E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이미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E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말을 듣고서 2021. 3. 9. C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을 뿐, C이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이는 모두 피고가 C의 진정한 채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에 불과한데, 피고가 진정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03,436,731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권액은 498,681,51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3,436,731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03,436,731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금선

별지

1) 이 법원 D 사건에서의 2021. 11. 22.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의 시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추인된다.